

## 1. 개정이유

자동차 튜닝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튜닝용 부품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자동차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튜닝용 부품을 추가(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24조, 안 별표1)
- 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튜닝인증부품”과 “튜닝안전확인부품” 추가(안 제4조제2항)
-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07조제1항 후단의”를 “제10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인증부품”이라 한다).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인증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안전확인부품”이라 한다).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안전확인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표1의 경미한 구조·장치
  - ② 규칙 제107조제2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튜닝인증부품.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인증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튜닝안전확인부품.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안전확인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표1의2의 이륜자동차 경미한 구조·장치

③ 공단은 튜닝안전확인부품의 대상 선정, 대상별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 제·개정, 기준 적합성 확인 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중 “규칙 제107조제2항”을 “규칙 제10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라 튜닝 후의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하는 일시”를 “규칙 제108조제3항에 따라 확인받아야 할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튜닝용 부품의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적합성 확인과 관련된 세부 절차 및 방법, 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튜닝안전확인부품표시 및 확인수수료가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1의 튜닝인증부품란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경미한 튜닝“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및 <u>제107조제1항 후단의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튜닝을 말한다.</u></p> <p>3. ~ 9. (생략)</p> <p>제4조(경미한 구조 및 장치) ① 규칙 제55조제1항 후단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는 <u>별표 1과 같다.</u></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u>제107조제2항에 따라</u> ----- -----.</p> <p>3. ~ 9. (현행과 같음)</p> <p>제4조(경미한 구조 및 장치) ① ----- ----- ----- ----- <u>다음 각 호와</u> ----- -----.</p> <p>1. 「<u>자동차관리법</u>」 제34조의3 <u>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인증부품”이라 한다).</u>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인증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신 설>

<신 설>

② 규칙 제107조제1항 후단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신 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안전확인부품”이라 한다).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안전확인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표1의 경미한 구조·장치

② 규칙 제107조제2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튜닝인증부품.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인증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튜닝안전확인부품.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안전확인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표1의2의 이륜자동차 경미한 구조·장치

③ 공단은 튜닝안전확인부품의 대상 선정, 대상별 자동차의 안

제5조(튜닝승인 세부기준) 규칙 제55조제3항 및 규칙 제107조제2항에 따라 튜닝을 하는 때에 적용하는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튜닝승인 접수 등) ①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산망(전산망이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튜닝승인서 발급 등) ① ~ ③ (생략)  
④ 공단은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간(이륜자동차의 경우는 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라 튜닝 후의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하

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 제·개정, 기준 적합성 확인 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튜닝승인 세부기준) -----  
----- 규칙 제107조제3항-----  
-----  
-----.

제6조(튜닝승인 접수 등) ① -----  
-----  
----- 공단-----  
-----  
-----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튜닝승인서 발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규칙 제108조제3항에 따라 확인받아야 할 기간-----

는 일시) 내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승인서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제24조(튜닝에 대한 업무규정 등)

①·② (생략)

<신설>

-----  
-----  
-----.

제24조(튜닝에 대한 업무규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튜닝용 부품의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적합성 확인과 관련된 세부 절차 및 방법, 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튜닝 안전확인부품표시 및 확인수수료가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